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1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(학생회복지원센터)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 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학생회복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.
- 따라서 안 제8조(학생회복지원센터)는 삭제하고,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8조(학생회복지원센터)는 삭제하고,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(학생회복지원센터)를 삭제하고,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한다.

